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조직 내 인적다양성의
객관성 제고 효과에 대한 연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 성 빈

조직 내 인적다양성의
객관성 제고 효과에 대한 연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 성 빈

박성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원장 권 일 응 (인)

부위원장 고 길 곤 (인)

위원 금 현 섭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대표되는 공공조직에서 조직다양성으로써 외부위원 비율 확대가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함에 있다.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과 조치 결과를 기재하여 입시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자치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의 내부위원과 더불어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 외부위원을 위촉토록 하였는데, 이는 대리인이론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대리인인 학교구성원들의 관용적 의사결정을 외부위원이 견제하고 주인인 일반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원하는 객관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부위원들이 실제로 자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에 기여하여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2016년 전국의 학교 중, 심의건수가 없거나 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위원 총 수가 5인 이상 10인 이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16,657교의 데이터이다. 학교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성별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교육환경(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에 대하여,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회귀분석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사안이 학교폭력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위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엄격조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에 대하여, 외부위원 비율과 엄격조치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외부위원 비율이 엄격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치율과 달리 외부위원이 사회봉사 이상의 엄격조치를 결정함에 부담을 느낀 결과이거나, 오히려 내부위원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통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시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와 같은 외부위원의 직업유형에 따른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비율과 조치율 간, 법조인 비율과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나,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현재 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데에 반해, 낮은 외부위원 비율의 하위 직업유형에 따라 의사결정 상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기 어려운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신설학교나 분교, 해당연도에 심의건수가 없는 학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외부위원의 유형의 세세한 구분을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행위의 원인을 모두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이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바, 향후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객관성, 대리인이론

학 번 : 2017-2331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7
제 1 절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	7
1. 학교폭력의 원인	7
2.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8
제 2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1. 민간기업 내 사외이사	1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4
3. 대리인 이론	15
제 3 장 연구설계 및 표본설정	18
제 1 절 연구설계 및 가설	18
1. 연구문제	18
2. 연구가설	18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과 변수설정	22
1. 연구의 분석틀	22
2. 변수설정	23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27
제 1 절 가설분석	27
1. 가설 1의 분석	27

2. 가설 2의 분석	36
3. 소결	53
제 2 절 분석의 한계	55
1. 분석범위의 한계	55
2. 학교폭력 원인 분석과 통제의 한계	56
제 5 장 결론	58
참고문헌	60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 학교의 연도별 구분	23
[표 2] 변수별 계산식 및 출처	25
[표 3] 자치위원회 관련 기술통계량	27
[표 4]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 상관분석	29
[표 5] 가설 1-1의 회귀모형 구성	30
[표 6]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30
[표 7]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32
[표 8] 가설 1-2의 회귀모형 구성	33
[표 9]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34
[표 10] 경찰공무원 비율 기술통계량	36
[표 11] 경찰공무원 비율과 조치율,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36
[표 12] 가설2-1-1의 회귀모형 구성	37
[표 13]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38
[표 14] 가설2-1-2의 회귀모형 구성	40
[표 15]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40
[표 16] 법조인 비율 기술통계량	42
[표 17] 법조인 비율과 조치율,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42
[표 18] 가설2-2-1의 회귀모형 구성	43
[표 19]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44
[표 20] 가설2-2-2의 회귀모형 구성	46
[표 21]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46
[표 22] 의사 비율 기술통계량	48
[표 23] 의사 비율과 조치율,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48
[표 24] 가설2-3-1의 회귀모형 구성	49
[표 25]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	49

[표 26] 가설2-3-2의 회귀모형 구성	51
[표 27]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52

그림 목차

[그림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도	11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대표되는 공공조직에서 조직다양성으로써 외부위원 비율 확대가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함에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연달아 터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악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학교폭력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청소년의 잔혹한 폭력행위에 국민들은 모두 크게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학생들을 엄벌하고 소년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현대사회의 청소년 조속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폭력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조치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엄격한 판단과 함께 청소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거듭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들을 논의해 나갔으며, 교육부는 법무부 등과 함께 소년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 반면,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도와 교화를 통해 청소년 학교폭력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교육적 측면의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일시적 효과를 가질 뿐이므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가해학생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해와 훈방조치 위주의 학교폭력 문제를 엄벌과 징계기조로 전환시킨 것은 2011년 12월, 한 대구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때문이다. 피해학생은 동급생 4명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는 유서를 남기며 자살했고, 국민들은 공분하였다. 이에 정부당국은 학교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사안을 조사한 후 필요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도록 하였고,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라 한다)에 남아 이후 입시에 반영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민간과 공공에게 공통된 것이며, 조직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방향으로 집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민간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공영역은 공익에 관한 각자의 소신, 사명 등이 더해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 구성원 간 균형과 견제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권한으로 인한 이익’과 ‘결과로 인한 책임’이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는 민간의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주주이나, 주요 의사결정은 고용된 경영진이 한다. 이때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개별주주, 그리고 풍부한 정보와 함께 결정의 권한을 갖는 경영진 간 정보비대칭성 및 이해상충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주인인 개별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개별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제도화된 것이 바로 사외이사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사외이사 제도를 비롯한 이사회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였다(김성훈·박철순, 2000).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 독점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조직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이를 완화하기 위한 외부인에의 견제 권한 부여는 공공영역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되는 자치위원회는 학교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조치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인 교원과 학부모 외에도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4항제9호). 학교의 내부 구성원이라 볼 수 있는 교원과 학부모가 평소 알고 지내는 가해학생에 보다 관대한 입장을 가지거나, 학교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이유로 가해학생에 엄격하게 조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실제로 가해학생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결정을 내리도록 기능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외부위원 위축이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저해하고 보다 대결중심으로 이끌어 가 종국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과연 상반된 주장들 속에서 자치위원회 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을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 출발점이다.

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에 따른 의사결정 객관성 제고 효과 연구는 사회적 분쟁해결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은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전학과 퇴학의 조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건수가 늘고 있고(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¹⁾, 비율 측면에 있어서도 총 심의건수 대비 재심청구 건수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²⁾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본 연구의 필요성은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재심청구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첫 번째 과정으로써, 그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다시금 결정해주길 요청하는 것임을 주지할 때, 자치위원회 결정의 객관성 확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재심은 물론 이후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까지 연쇄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당사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비판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위주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관계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차원의 종결권을 부여하여,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 동시에 일부 전문가는 경미한 사안의 종결을 위한 갈등조정 과정에 있어 교사 이외에 객관적으로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경찰관이나 외부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한재경, 2018), 실제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향후의 정책설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1) 재심청구 건수(학년도): ('12) 572건 → ('13) 764건 → ('14) 901건 → ('15) 978건 → ('16) 1,299건
 2) 심의건수 대비 재심청구 건수 비율(학년도): ('12) 2.31% → ('13) 4.30% → ('14) 4.62% → ('15) 4.90% → ('16) 5.49%

또한 본 연구는 공공조직 차원의 대리인 문제, 그리고 현실 행정에서 조직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위원 비율 조정 등에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공공조직도 민간기업과 같이 주인과 대리인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겪는지, 대리인에 대한 주인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확대토록 규정하는 것이 실제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여 관련 이론의 공공영역 적용범위에 일정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구에 있어 자치위원회 내 외부위원의 비율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위원은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 기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4항제9호). 이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있어 임명주체인 학교장의 이해가 고려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학교장은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에 위촉 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지 미리 고려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결정의 객관성 등을 제고하고자 외부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객관적이어 보이기 위해서 임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만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도 임명주체의 이해가 미리 반영되어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인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이후 비슷한 사례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문제와 이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인 자치위원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관련된 이론으로 대리인 이론을 대입해본 뒤, 연구설계 후 실증분석 결과를 논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의 ‘조직 내 인적다양성’이란 조직 내 구성원의 배경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의미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내부구성원인 교원과 학부모, 외부구성원인 경찰공무원·법조인·의사·기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담당 교원, 그리고 법령에 따라 과반수를 차지하는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는 2014~2016년 전국 학교의 자치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에 대하여 SPSS를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

1.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원인은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요인으로 생물학적 원인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주로 언어적·신체적 행동을 통제하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 학교폭력의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도 같은 문제를 보여 결국 폭력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문용린 외, 2006). 또한 개인적 특성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충동성과 공격성이다. 또래에 비해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분노를 조절하거나 화를 참기 어려워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노성호, 2004).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의 불화나 이별,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 부모의 범죄성향 등이 있는 경우 가정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청소년의 행동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창균·임계령, 201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부모 상호간의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결핍된 사랑을 보충하기 위한 행태를 보인다. 이는 종종 친구들에 대한 폭력과 적대감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특히 자신보다 약한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당위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은 보통에 비해 자신감이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조종태, 2013).

학교요인으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통솔력과 지도력의 부재 등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이상균, 1999). 학생에게 교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갈등을 중재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보다 쉽게 학교폭력으로 진전될 수 있다. 교사의 무관심과 함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가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다(김순혜, 2012; 정재준, 2012). 다만,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인다 해도, 학업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여 자신의 적성을 고민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어(곽영길, 2007), 학교폭력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경향은 일관되지 않다.

사회요인으로는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지역 사회 내에서도 구성원 간 상대적 빈곤, 교육으로부터의 소외, 의료 혜택 부족 등이 심리적인 열등감, 좌절과 포기 등의 문제를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김창균·임계령, 2010). 다만,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비행행동과 연관이 높다고 분석한 연구(권정혜·이봉건·김수현, 1992)가 있는 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춘재·곽금주, 1999)도 있어 일관된 연구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2.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부는 학교폭력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확충, 안전인프라 확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그리고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제3차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14). 우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간 또래상담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와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경찰청과 함께 운영하여 청소년의 경찰 역할체험 및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안전인프라 차원에서 학교폭력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안전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CCTV는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도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였다.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학교별로 배치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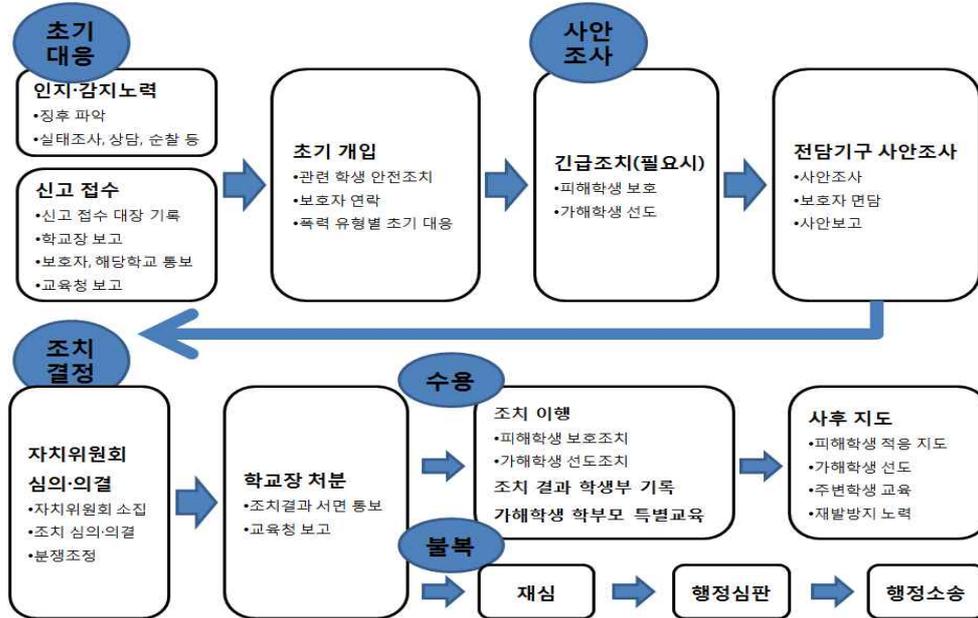
공정한 사안처리와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공무원·법조인·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을 확대토록 하고 있다.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과목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를 교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찰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별로 ‘위(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상담을 원하는 학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신과 자문의를 지역별로 위촉하여 고위기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적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 교육·치유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모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협업을 지원하였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살펴보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방법 제2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한편 학교폭력을 보고받은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등의 사안조사를 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소집·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어지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7조).

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로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해당학교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한편 해당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각각의 재심절차를 통해 재심기구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절차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의2).

[그림1]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도(교육부, 2014)



제 2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민간기업 내 사외이사

우리나라 사외이사 제도는 1998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회사에 도입되었으며,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되었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2조).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해 상장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42조의8). 비교적 짧은 사외이사제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주로 지배주주나 경영자에 의해 사외이사가 선임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사외이사의 직업군을 분류해보면 학계가 30% 이상, 공무원과 기업인 출신이 각각 2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법조계가 약 15% 등으로 나타난다. 기업인 출신은 감소하고 학계와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는 증가 추세에 있다(이수정, 2018).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에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로서, 내부인들만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그 활동을 활성화하여 회사의 발전과 함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이기수, 2002). 사외이사는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영진의 면직과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데, 실제로 미국의 우수기업들은 이사회에 결정으로 최고경영진을 퇴진시키기도 한다(권순희, 2003).

결국 사외이사 제도는 민간기업에 존재하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대신, 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발생한 잉여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반면 경영자들은 보통 정해진 임금에 더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갈 뿐, 위험부담을 하지 않는다. 즉 일반 주주의 위험부담과 경영진의 경영이 명확히 분리된다(Fama & Jensen, 1983). 이러한 위험부담과 경영의 분리는 일반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 문제를 낳기도 하는데,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직위에 따른 특권적 소비를 늘려 전체적인 비용증가와 기업이익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시키고 경영자가 일

반 주주의 이익에 맞게 업무를 수행토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역할인 것이다.

하지만 사외이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우선 이문영 외(2013)는 이사회 독립성이 낮을수록 감독 기능이 제한되어 기업 정보 공개율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사외이사 비중과 공정공시 빈도 간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김문태·김영환(2007)은 이사회 독립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높는데, 이는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Rosenstein & Wyatt(1990)는 주식시장에서 사외이사의 추가 선임에 대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광지영 외(2009)는 오히려 회계관리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사외이사 비중이 더 높았음을 보이며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것은 단지 기업들의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김창수(2006)는 우리나라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가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Hermalin & Weisbach(1991)은 사외이사 비중과 기업의 성과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사외이사의 효과성 판단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사외이사의 임명단계에서부터 임명권자인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사회 감시 및 통제활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동기나 능력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이경환·서정일, 2015). 이 경우 사외이사가 많이 선임된다고 해서 실제 조직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보다는,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써 최초 사외이사 선임의 목적을 희석시킬 수 있다. 둘째로, 사외이사 직종의 다양성에 관해 고려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들의 직업 관련 전문성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각자의 가치관과 능력이 직업 선택에 반영되고 직업군 내에서 일정한 규범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다(Finkelstein et al., 2009).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자치위원회 자체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교폭력이라는 전체 연구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위원 위촉 확대를 통한 전문성 보완, 더 나아가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유경 외(2012)는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충분한 역량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원의 전문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두는 규정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철(2010)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 비율을 줄이고,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외부 전문가 위촉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수·장사형(2017)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자치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내부인 위주로 구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사안조사와 조치결정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인식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학생생활지도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평소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사안조사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적으로 학교 내부인인 교감과 학생생활지도 교사가 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조치결정의 윤곽을 제시한다고 한다. 더불어, 자치위원으로 활동함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위촉하여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사안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3. 대리인 이론

대리인 관계(agency relationship)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주인; principal)이 의사결정을 타인(대리인; agent)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계약관계를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Jensen & Meckling, 1976). 이러한 관계에서 주인인 주주는 대리인인 경영자가 항상 주인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는다. 대리인은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인의 이익극대화와 반대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 결과 주인과 대리인 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타나고,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인 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대리인이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 하는지 주인이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권일웅, 2012). 따라서 어떻게 하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대리인 문제 결과 나타나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리인 비용은 확증비용(bonding cost)과 감시비용(monitors costs), 잔여손실(residual losses)로 나눌 수 있는데, 대리인 이론은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Jensen & Meckling, 1976).

대리인 이론을 자치위원회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주인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전체 구성원, 더 나아가 지역적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인은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소수의 자치위원회 위원이다.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전체 구성원과 자치위원 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주인인 학교(지역)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적극적인 조

치를 원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학생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합리적인 선도 및 징계 조치를 결정하길 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리인인 자치위원, 특히 내부위원은 다를 수 있다. 우선 자치위원회의 교원은 주로 학생생활지도 교사가 맡는데, 생활지도 교사는 업무 부담이 크고 학교폭력 사안의 원만한 해결, 그리고 화해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지도해온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 위원은 법령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 혹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하여야 하는데(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4조), 이는 학부모 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위촉하고 그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그 대표는 학교에 봉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가 많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보통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크고,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수준이나 명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학교폭력 사안에 엄격한 조치를 내려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자녀의 친구일 가능성이 있어,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낌과 동시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의사결정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자치위원의 이해 추구를 억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기제가 바로 외부위원의 위촉이다. 학교별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그 결과를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외부 공개토록 하여 학교로 하여금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관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것이다. 대리인 이론의 핵심이 대리인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 할 때,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이에 수반되는 감시비용이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을 때의 관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자치위원회의 외부

위원 위촉에 따른 비용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무료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시비용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인데 반해, 학교 폭력 전문으로 소문난 한 변호사의 한 달 평균 상담 건수가 평균 100건 안팎이고 보험사는 교원 대상 ‘소송보험(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제공하는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객관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³⁾

이하 연구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의 효과를 논한다. 조직 내 의사결정 상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필요함을 핵심으로 하는 대리인 이론을 통해 조직 내 의사결정에 있어 편의를 극복하고 이해상충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외부위원 위촉 확대 노력의 효과를 확인한다.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대리인 이론을 공공조직에서 확인 가능한지,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련해 학술적으로도 일정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김형준 (2017.10.27.). 학교 폭력에 변호사부터 부르는 부모들.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70457539329>

제 3 장 연구설계 및 표본설정

제 1 절 연구설계 및 가설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치위원회 내 인적다양성으로써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은 경우 가해학생에 보다 엄격한 조치가 결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조인·의사 등 외부위원의 직업적 배경에 따라서도 가해학생에 보다 엄격한 조치가 결정되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둘러싼 분쟁의 비효율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치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위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외부위원의 직업적 배경에 따라 강조점을 둘 필요는 없는지에 관해 정책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율 또는 엄격조치율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 조치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연구가설

【가설 1: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1) 전체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이 높아진다.

(2) 전체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우선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교원과 학부모의 관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위원회
내부위원인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가해학생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
일수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선도적 측면에서 비교적 온건한 조치
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이에 승복하지 못하고 상대의 조치에 대한
재심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내려진 전학과 퇴학의 조치가 피해자 위주의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과라 판단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각자 입장에서 내부위원인 교원과 학부모 판단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
을수록 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더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해학생에 조치를 내리
는 비율이 높아지는지 확인한다.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에 이르
기까지 어떠한 조치이든 심의 한 건 당 더 많이 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
이다.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
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
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중 필요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호 서면사과라 하더라도 조치가
내려진다는 자체는 큰 의미를 갖는다. 조치가 내려지는 순간 사안이 학
교폭력에 해당함을 의미하며 가해학생의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이 기록되고 졸업 이전까지 삭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더 많이 조치하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로,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로 가해학생에게 사회봉사 이상의 엄격한 조치를 내리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의 조치 중 엄격한 조치가 무엇인지의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지만, 실무적으로 제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 엄격한 조치로 본다.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적사항의 변동 없이, 그리고 학교 내의 범위에서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의 폭력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제4호 사회봉사 이상으로 더 엄격히 조치하는지 확인한다.

【가설 2: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 (1)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낮아진다.
- (2) 외부위원 중 법조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 (3) 외부위원 중 의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외부위원의 직업유형에 따라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교육공동체에서 각 직업군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학생들과 자주 교류하는지, 자치위원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유형 그 자체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관이 달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는 사외이사 직업군별로 반복된 경험을 통해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효과성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Hambrick, 2007).

우선 경찰공무원은 주로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관련 업무를 맡기 위해 분류된 경찰공무원으로, 1인당 평균 10여 개교를 담당하여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등을 지원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의 특성상 학생과 자주 접촉하고 실제로 업무특성상 친근감을 쌓도록 요청받기에, 경찰공무원은 보다 온건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법조인은 학교폭력 사안에 관해 충분한 법적지식이나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판사·검사·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가장 결정적인 법적 지식을 갖춘 이들로, 자치위원회 내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보다는 학교폭력 사안 그 자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기에,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의사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학교폭력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위원 위촉의 배경과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의사는 피해학생에 보다 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해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과 변수설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2014~2016년 자치위원회 내 외부위원의 비율과 직업유형의 비율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연구의 분석틀을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독립변수는 2014~2016년 자치위원회 내 외부위원의 비율, 외부위원 직업유형의 비율이며 종속변수는 조치의 객관성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율(심의당 조치건수), 엄격조치율(조치당 엄격조치건수)이다. 이때 통제변수는 학교의 객관적 조건으로써 성별구분 여부(남녀공학, 남자학교, 여자학교), 학교규모(대규모, 중대규모, 중소규모, 소규모),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교육환경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로써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로 한다. 분석대상은 2014~2016년 전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국의 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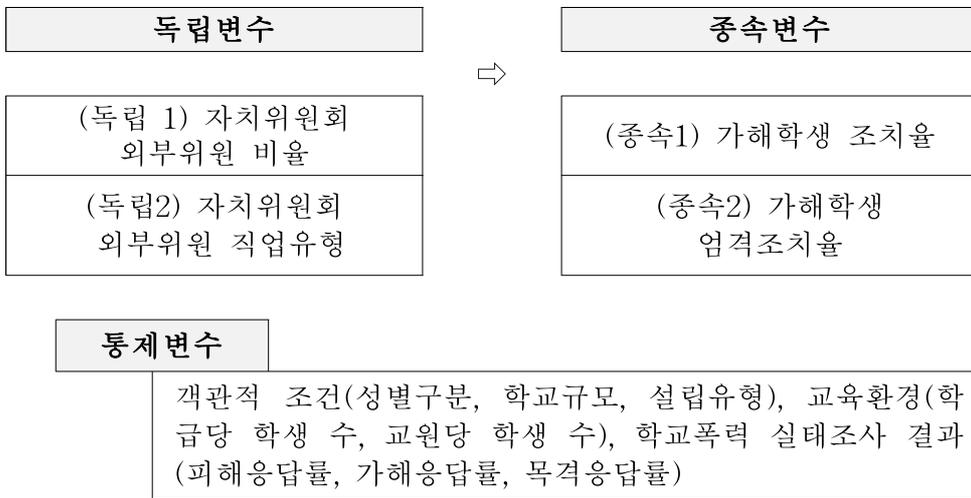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첫째, 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연도에 심의건수가 없는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과 상관없이 조치와 엄격조치도 없어 그 데이터 분석이 무의미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학교알리미 공시에 있어 분교 또는 신설학교 등을 이유로 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 셋째, 자치위원회 위원이 5인 이상 10인 이하가 아닌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난 위원 수를 공시한 경우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자치위원회 구성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일부 학교를 제외하여 2014년 총 11,627교 중 5,185교, 2015년 총 11,695교 중 5,455교, 2016년 11,745교 중 6,017교, 전체 16,657교의 데이터가 분

석대상이 된다. 연구의 신뢰도는 95% 이내로 측정한다.

[표1] 분석대상 학교의 연도별 구분

연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2014	5,185	31.1	31.1
2015	5,455	32.7	63.9
2016	6,017	36.1	100.0
전체	16,657	100.0	

[그림2] 연구의 분석틀



2. 변수설정

독립변수인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해당학교 전체 자치위원회 위원 중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 교원과 학부모가 아닌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치위원회 직업유형의 구분은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로 나누어 확인하며 모든 자료는 매년 2회 정보공시되는 학교알리미⁴⁾ 자료를 활용한다.

4) <http://www.schoolinfo.go.kr>

종속변수인 가해학생 조치율은 2014~2016년 심의를 한 건이라도 한 학교에서 심의건수 대비 조치건수의 비율 값이다. 한 건의 심의에서도 여러 건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중복적으로 결정하거나, 가해학생이 여럿인 경우 나타난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 조치율은 전체 조치건수 대비 제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차지하는 비율 값이다. 다만 이하 분석에서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은 로그 값을 취하여 변수로 활용한다. 기존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의 분포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종속변수 또한 독립변수와 같이 학교알리미 사이트 공시자료를 활용한다.

이 외에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과 상관없이 학교폭력의 수준을 달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을 반영한다. 다만 개인의 생물학적 혹은 성격적 측면, 그리고 가정 내 불화와 학대여부에 관해서는 정량적 통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사회요인으로 학업성취도 등은 학교폭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견대립이 있으며, 시·도별 지역적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통제변수로 설정하지 않는다.

학교의 객관적 조건으로써 성별을 구분하는지, 학교규모는 어떤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등을 고려한다. 교육환경으로써는 교사의 무관심, 통솔력과 지도력의 부재가 학교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를 통제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별 학교폭력의 일반적 수준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율, 엄격조치율과 같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년 2회 전국 초3~고3 학생(하반기 조사의 경우 고3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통제한다. 실태조사 내용 중 피해응답률(지난 6개월 간 한번이라도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가해응답률(지난 6개월 간 한번이라도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목격응답률(지난 6개월간 한번이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모두 활용하여 연구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다만 학교폭력 실태조사 수치도 종속변수와 같이 로그변환 값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객관적 조건은 교육청 보유 자료를,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⁵⁾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알리미 사이트 공시자료를 활용한다.

[표2] 변수별 계산식 및 출처

항목	변수명	계산식	출처
-	위원총수	교사+학부모+법조인+경찰공무원+의사+기타	학교알리미
-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공무원, 기타	-	
독립	외부위원 비율	(경찰공무원+법조인+의사+기타)/위원총수	
-	심의건수, 조치건수, 조치항목 세부 구분(제1호~제9호)	-	
독립	경찰공무원 비율	경찰공무원/외부위원	
독립	법조인 비율	법조인/외부위원	
독립	의사 비율	의사/외부위원	
	조치율	조치건수/심의건수	
	엄격조치율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조치건수	

5) <http://kess.kedi.re.kr>

종속	조치율	조치율 로그 값	
종속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로그 값	
통제	성별구분	남녀공학/남자/여자	교육청
통제	설립유형	국·공립/사립	
통제	학교규모	대규모/중대규모/중소규모/소규모	
통제	학급당 학생수	학생 수/학급 수	교육 기본통계
통제	교원당 학생수	학생 수/교원 수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	학교알리미
통제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로그 값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가설분석

1. 가설 1의 분석

【가설 1: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가설 1-1) 전체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이 높아진다.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비율이 높아지는지 전국 학교 단위에서 확인한다. 우선 자치위원회 기본사항 및 변수들에 관한 기술통계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3] 자치위원회 관련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위원총수	16,657	5.0	10.5	8.622	1.1169
교원	16,657	.0	5.0	2.453	.5947
학부모	16,657	.0	8.0	4.903	.7003
법조인	16,657	.0	2.0	.163	.3689
경찰공무원	16,657	.0	2.0	.971	.2243
의사	16,657	.0	1.0	.017	.1279
기타	16,657	.0	4.0	.115	.3177
외부위원 비율	16,657	.0000	.7143	.146907	.0535408
심의건수	16,657	1	42	3.75	3.697
조치건수	16,657	0	148	8.49	11.880
서면사과	16,657	0	59	2.43	3.868

접근금지	16,657	0	37	1.47	3.046
학교봉사	16,657	0	36	1.37	2.602
사회봉사	16,657	0	20	.53	1.390
특별교육	16,657	.000000	46.000000	1.61019391	2.783278138
출석정지	16,657	.000000	25.000000	.62868464	1.558004618
학급교체	16,657	0	9	.13	.482
전학	16,657	0	9	.30	.752
퇴학	16,657	0	9	.02	.222
조치율	16,657	.0000	35.0000	2.206690	2.3399248
엄격조치율	16,657	.0000	1.0000	.332944	.3143998
학급당 학생수	16,657	.0000	45.0000	26.241185	7.1783243
교원당 학생수	16,657	.0000	30.5714	13.609352	4.2167515
피해응답률	16,657	.0000	20.2381	1.046805	1.2623685
가해응답률	16,657	.0000	18.6012	.477892	.7930262
목격응답률	16,657	.0000	37.4469	2.990324	2.8261319

2014~2016년 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연도 한 건 이상 심의한 16,657교에서 교당 평균 8.6명 수준으로, 학부모(4.9명), 교원(2.5명)이 다수를 차지한다. 외부위원의 비율은 평균 14.7%이며 경찰공무원(1.0명), 법조인(0.2명), 기타(0.1명), 의사(0.02명) 순으로 구성된다. 법령에서 학부모를 자치위원회 과반수로 구성토록 하여 학부모의 비율이 가장 많다. 외부위원 중에서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을 쉽게 위촉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이 가장 많고, 자치위원회가 하나의 경력이 되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법조인이 그 다음이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한 의사의 위촉은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 상 부족한 수준이다.

학교폭력 사안 심의당 평균 2.2건의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조치 한 건당 엄격조치는 평균 0.3건이다. 사안 심의에 있어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조치를 중복적으로 내린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조치 중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엄격조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6.2명, 교원당 학생 수는 13.6명이며 이는 OECD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낮추려 노력한 결과이다.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평균 1.0%, 가해응답률 평균 0.5%, 목격응답률 3.0% 수준이다. 학교폭력에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2년 첫 조사(12.3%)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며, -1에서 1의 값 중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가해학생 조치율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 상관분석

		외부위원비율	조치율
외부위원비율	Pearson 상관계수	1	.017
	유의확률 (양쪽)		.035
조치율	Pearson 상관계수	.017	1
	유의확률 (양쪽)	.035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확률은 0.035(<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에서 사회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워낙 다양함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맞추어 일정한 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 조치율에 대하여 독립변수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학교의 객관적 조건(남녀

구분 여부, 학교규모, 설립유형), 교육환경(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교폭력 실태조사(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를 순차적으로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5] 가설1-1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독립변수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변수 (교육환경)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변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가해학생 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비율	0.238** (2.110)	0.226** (2.018)	0.172 (1.534)	0.283** (2.189)
남녀구분 더미1	-	-0.018 (-0.950)	-0.048** (-2.456)	-0.067*** (-2.914)
남녀구분 더미2	-	-0.028 (-1.092)	-0.053** (-2.039)	0.046 (1.237)
학교규모 더미1	-	0.403*** (6.292)	0.139 (1.689)	-0.019 (-0.143)

학교규모 더미2	-	0.327*** (5.265)	0.064 (0.824)	-0.081 (-0.648)
학교규모 더미3	-	0.279*** (4.480)	0.049 (0.684)	-0.123 (-1.022)
학교규모 더미4	-	0.114* (1.725)	-0.044 (-0.640)	-0.249** (-1.994)
설립유형 더미	-	0.000 (0.008)	-0.029* (-1.699)	-0.008 (-0.384)
학급당 학생수	-	-	0.016*** (10.095)	0.030*** (13.872)
교원당 학생수	-	-	-0.013*** (-4.397)	-0.031*** (-8.644)
피해응답률	-	-	-	-0.008 (-0.594)
가해응답률	-	-	-	0.070*** (6.316)
목격응답률	-	-	-	0.006 (0.345)
수정된 R제곱	.000	.008	.015	0.022

※ () 안은 t값,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가 추가될수록 수정된 R제곱 값이 높아져 설명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형4에서 모든 통제변수에 대하여 수정된 R제곱 값은 0.022로, 종속변수의 변동을 2.2% 설명한다. 외부위원 비율의 회귀계수는 0.283으로 조치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r=0.029 < 0.05$). 즉, 자치위원회 내의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에서 조치가 더 많이 내려진다. 이는 최초 예상한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이 내부위원인 교원과 학부모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남자학교에서 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r=0.004<0.05$), 남녀공학 학교에 비해 남자 학생들만 있는 경우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인다. 학교규모에서는 소규모의 학교에서 조치율이 낮게 나타나는데($r=0.049<0.05$), 이는 큰 규모의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소극적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조치율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높고($r=0.000<0.05$), 교원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낮음($r=0.000<0.05$)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제한된 공간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해야 하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보다 더 쉬운 환경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교원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조치율이 낮다는 점은 단순히 교원당 학생 수라는 산술적 수치가 학생에 대한 교원의 관심, 이를 통한 학교폭력 경감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해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치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 ($r=0.000<0.05$)을 통해 실태조사와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 간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1-2) 전체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해학생 엄격조치율이 높아지는지 확인한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외부위원비율	엄격조치율
외부위원비율	Pearson 상관계수	1	-.016
	유의확률 (양쪽)		.094
엄격조치율	Pearson 상관계수	-.016	1
	유의확률 (양쪽)	.094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엄격조치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유의확률이 0.094(>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엄격조치율은 조치율과 달리 학교폭력 여부에 더해 그 사안의 심각성, 사안 조사 시의 피해학생 감정 및 화해여부, 가해학생 반성정도 등 사안의 실제적 측면과 교육·선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고려할 때, 단순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는 어려움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맞추어 일정한 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과 같이 우선 종속변수 엄격조치율에 대하여 독립변수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학교의 객관적 조건(남녀 구분 여부, 학교규모, 설립유형), 교육환경(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교폭력 실태조사(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을 순차적으로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8] 가설1-2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독립변수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변수 (교육환경)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변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가해학생 엄격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9]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비율	-0.170 (-1.674)	-0.141 (-1.400)	-0.150 (-1.485)	-0.246** (-2.117)
남녀구분 더미1	-	-0.022 (-1.306)	-0.020 (-1.151)	-0.003 (-0.151)
남녀구분 더미2	-	0.032 (1.322)	0.033 (1.348)	0.012 (0.374)
학교규모 더미1	-	-0.397*** (-6.743)	-0.250*** (-3.291)	-0.274** (-2.348)
학교규모 더미2	-	-0.297*** (-5.196)	-0.168** (-2.360)	-0.190* (-1.683)
학교규모 더미3	-	-0.226*** (-3.932)	-0.125* (-1.869)	-0.149 (-1.366)
학교규모 더미4	-	-0.016 (-0.257)	0.039 (0.604)	0.053 (0.464)
설립유형 더미	-	0.056*** (3.721)	0.065*** (4.246)	0.047** (2.431)
학급당 학생수	-	-	-0.001 (-0.931)	-0.004* (-1.712)
교원당 학생수	-	-	-0.006** (-1.996)	0.000 (-0.051)
피해응답률	-	-	-	0.011 (0.838)
가해응답률	-	-	-	-0.031*** (-3.087)
목적응답률	-	-	-	0.037** (2.531)
수정된 R제곱	0.000	0.021	0.022	0.013

※ () 안은 t값, ***: p<0.01, **: p<0.05, *: p<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가를 거듭하여 최종 모형4에서 수정된 R제곱 값은 0.013으로 종속변수의 변동을 1.3%를 설명한다. 엄격조치율에 대한 외부위원 비율의 회귀계수는 -0.246으로 부(-)의 영향을 미친다($r=0.034<0.05$). 이는 조치율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친 것과 반대이다. 추론컨대, 외부위원은 사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위촉되었지만, 제4호 이상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학교폭력 여부의 결정에 그치는 제1호~제3호의 조치와 달리 한 학생에게 선도 그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외부위원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반대로, 엄격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이 더 객관적인 결정일 수 있다. 외부위원의 다수는 경찰공무원이나 법조인인데, 이들은 해당 학교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사례, 더 나아가 다른 형사사건의 사례들을 알고 있는 전문가이다. 자치위원회 심의를 자주하지 않는 학교에서 소수의 사건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전문가인 외부위원은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안들과 비교하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도 있다.

학교규모에 있어 대규모 학교가 일관성 있게 엄격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0.019<0.05$). 설립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의 엄격조치율이 높게 나타난다($r=0.015<0.05$). 이는 국·공립은 정기적으로 교원 인사교류를 하여 해당 기간에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엄격조치 결정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과 달리, 사립은 고유의 인재양성 가치를 가지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엄격조치를 결정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목격응답률이 엄격조치율에 정(+)의 영향을 보여 실태조사 결과와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 간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r=0.011<0.05$), 가해응답률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r=0.002<0.05$). 이는 조치율과 달리 엄격조치율은 보다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설문조사 양식의 단순 가해경험 응답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엄격조치율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가설 2의 분석

【가설 2: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설 2-1)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낮아진다.

[표10] 경찰공무원 비율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찰공무원	16,657	.0	2.0	.971	.2243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16,657	.0000	1.0000	.821492	.2771485

2014~2016년 심의건수가 한 건 이상인 학교 16,657교에서 외부위원으로 경찰공무원을 최소 0명에서 최대 2명까지 위촉하였으며 교당 평균 0.97명 위촉하였다. 외부위원으로 경찰공무원 1명을 위촉한 경우가 많아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의 비율은 82.1% 수준이다. 이는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각 근무지에서 학교를 관할하여 근무하고 있고, 외부위원 위촉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위촉의 정당성과 편의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을 위촉하는 점, 상대적으로 다른 외부위원인 법조인과 의사의 협조를 얻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해되는 결과이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1] 경찰공무원 비율과 조치율,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조치율	엄격조치율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Pearson 상관	1	-.021	.015
	유의확률 (양측)		.012	.112

조치율	Pearson 상관	-.021*	1	-.326
	유의확률 (양측)	.012		.000
엄격조치율	Pearson 상관	.015	-.326	1
	유의확률 (양측)	.112	.000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조치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확률은 0.012(<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학생에게 교육적·선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인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보다는 별도의 교육이나 대화 등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점이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엄격조치율에 대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데($r=0.112<0.05$), 보다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는 엄격조치율의 경우 직업유형만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우선 종속변수를 조치율로 하는 회귀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맞추어 일정한 모형을 【가설 1】과 일관성 있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조치율에 대하여 독립변수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학교의 객관적 조건(남녀 구분 여부, 학교규모, 설립유형), 교육환경(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교폭력 실태조사(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을 순차적으로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12] 가설2-1-1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독립변수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 변수 (교육환경)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 변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자치위원회 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3]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0.555** (-2.513)	-0.039* (-1.782)	-0.022 (-1.007)	-0.034 (-1.337)
남녀구분 더미1	-	-0.018 (-0.950)	-0.048** (-2.446)	-0.067*** (-2.896)
남녀구분 더미2	-	-0.029 (-1.098)	-0.053** (-2.044)	0.046 (1.240)
학교규모 더미1	-	0.403*** (6.303)	0.141* (1.707)	-0.018 (-0.142)
학교규모 더미2	-	0.328*** (5.284)	0.065 (0.845)	-0.081 (-0.645)
학교규모 더미3	-	0.282*** (4.519)	0.052 (0.713)	-0.122 (-1.009)
학교규모 더미4	-	0.119* (1.794)	-0.041 (-0.597)	-0.246** (-1.976)
설립유형 더미	-	-0.003 (-0.154)	-0.031* (-1.797)	-0.012 (-0.549)
학급당 학생수	-	-	0.016*** (10.073)	0.030*** (13.771)
교원당 학생수	-	-	-0.013*** (-4.4410)	-0.031*** (-8.597)

피해응답률	-	-	-	-0.009 (-0.618)
가해응답률	-	-	-	0.070*** (6.293)
목격응답률	-	-	-	0.005 (0.318)
수정된 R제곱	0.000	0.008	0.015	0.021

※ () 안은 t값,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가 추가될수록 수정된 R제곱 값이 높아져 설명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통제변수에 대하여 수정된 R제곱 값은 0.021로, 종속변수의 변동을 2.1% 설명한다.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의 회귀계수는 -0.034로 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r=0.181 > 0.05$). 즉 상관분석에서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자치위원회 조치율 간 상관관계는 확인되었으나, 회귀분석에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최초의 모형1 이후 모형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통제변수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조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외부위원의 비율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데 그 하위 직업 유형인 경찰공무원의 비율은 더 충분치 않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비율의 평균은 12.1% 수준이나, 자치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학교폭력 예방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경찰공무원이 없거나 한명 있는 수준으로 의사결정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가설 1-1의 결과와 유사하다. 남자학교($r=0.004 < 0.05$)와 소규모 학교($r=0.048 < 0.05$)에서 조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r=0.000 < 0.05$), 교원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r=0.000 < 0.05$), 조치율은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해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치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r=0.000 < 0.05$)을 통해 실태조사와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 간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종속변수를 엄격조치율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14] 가설2-1-2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독립변수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변수 (교육환경)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변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자치위원회 엄격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5]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중 경찰 비율	0.032 (1.589)	0.013 (0.650)	0.013 (0.673)	0.029 (1.251)
남녀구분 더미1	-	-0.023 (-1.324)	-0.020 (-1.169)	-0.004 (-0.180)
남녀구분 더미2	-	0.032 (1.327)	0.033 (1.355)	0.012 (0.369)
학교규모 더미1	-	-0.398*** (-6.752)	-0.252*** (-3.320)	-0.278** (-2.383)

학교규모 더미2	-	-0.298*** (-5.206)	-0.170** (-2.387)	-0.194* (-1.717)
학교규모 더미3	-	-0.227*** (-3.951)	-0.127* (-1.899)	-0.154 (-1.410)
학교규모 더미4	-	-0.018 (-0.288)	0.037 (0.566)	0.048 (0.417)
설립유형 더미	-	0.057*** (3.809)	0.067*** (4.331)	0.050** (2.594)
학급당 학생수	-	-	-0.001 (-0.940)	-0.003 (-1.646)
교원당 학생수	-	-	-0.006* (-1.954)	0.000 (-0.059)
피해응답률	-	-	-	0.011 (0.868)
가해응답률	-	-	-	-0.031*** (-3.065)
목격응답률	-	-	-	0.037** (2.547)
수정된 R제곱	0.000	0.021	0.022	0.013

※ () 안은 t값,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가를 거듭하여 최종 모형4에서 수정된 R제곱 값은 0.013으로 종속변수의 변동을 1.3%를 설명한다. 엄격조치율에 대한 외부위원 중 경찰공무원 비율의 회귀계수는 0.029로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확률이 0.211(>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또한 조치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찬성이라는 자치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현실적으로 낮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가설 1-2와 비슷하다. 학교규모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학교($r=0.017 < 0.05$)가 통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엄격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설립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의 엄격조치율이 높게 나타난다($r=0.010<0.05$).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목적응답률이 엄격조치율에 정(+)의 영향을 미쳐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와 일관성을 가짐($r=0.011<0.05$)을, 가해응답률이 엄격조치 수준의 사안까지는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음($r=0.002<0.05$)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2-2) 외부위원 중 법조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표16] 법조인 비율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조인	16,657	.0	2.0	.163	.3689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16,657	.0000	1.0000	.086207	.2006614

2014~2016년 심의건수가 한 건 이상인 학교 16,657교에서 외부위원으로 법조인을 최소 0명에서 최대 2명까지 위촉하였으며 교당 평균 0.16명 위촉하였다.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은 8.6% 수준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영향으로 경찰공무원의 수가 매우 많으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조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치위원회 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쌓으려는 변호사들이 있어 외부위원 위촉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일정 수준 위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7] 법조인 비율과 조치율,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조치율	엄격조치율
외부위원 중	Pearson 상관	1	.018	-.026

법조인 비율	유의확률 (양측)		.030	.006
조치율	Pearson 상관	.018	1	-.326
	유의확률 (양측)	.030		.000
엄격조치율	Pearson 상관	-.026	-.326	1
	유의확률 (양측)	.006	.000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과 조치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확률은 0.030(<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법조인이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형법을 포함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조치율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확률은 0.006(<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속하여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나 징계의 수위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종속변수를 조치율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맞는 회귀모형을 이전의 분석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표18] 가설2-2-1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독립변수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변수 (교육환경)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변수				피해응답률,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	--	--	--	-----------------

외부위원 중 범조인 비율과 자치위원회 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9] 외부위원 중 범조인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중 범조인 비율	0.065** (2.168)	0.028 (0.923)	0.009 (0.288)	0.018 (0.530)
남녀구분 더미1	-	-0.018 (-0.949)	-0.048** (-2.441)	-0.067*** (-2.898)
남녀구분 더미2	-	-0.029 (-1.096)	-0.053** (-2.050)	0.045 (1.223)
학교규모 더미1	-	0.402*** (6.273)	0.140* (1.697)	-0.019 (-0.149)
학교규모 더미2	-	0.326*** (5.256)	0.064 (0.831)	-0.082 (-0.655)
학교규모 더미3	-	0.280*** (4.489)	0.050 (0.692)	-0.124 (-1.024)
학교규모 더미4	-	0.116* (1.750)	-0.044 (-0.634)	-0.249** (-1.993)
설립유형 더미	-	-0.002 (-0.107)	-0.031* (-1.765)	-0.011 (-0.519)
학급당 학생수	-	-	0.016*** (10.144)	0.030*** (13.879)
교원당 학생수	-	-	-0.013*** (-4.466)	-0.032*** (-8.679)
피해응답률	-	-	-	-0.008 (-0.611)
가해응답률	-	-	-	0.069** (6.266)

목적응답률	-	-	-	0.006 (0.349)
수정된 R제곱	0.000	0.008	0.015	0.021

※ () 안은 t값,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가 추가될수록 수정된 R제곱 값이 높아져 설명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통제변수에 대하여 수정된 R제곱 값은 0.021로, 종속변수의 변동을 2.1%를 설명한다.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의 회귀계수는 0.018로 조치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확률은 0.596(>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상관분석에서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과 자치위원회 조치율 간 상관관계는 확인되었으나, 회귀분석에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최초의 모형1 이후 모형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통제변수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의 비율이 조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경찰공무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비추어볼 때 법조인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른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가설 1-1의 결과와 유사하다. 남자학교($r=0.004 < 0.05$)와 소규모 학교($r=0.046 < 0.05$)에서 조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r=0.000 < 0.05$), 교원당 학생 수($r=0.000 < 0.05$)가 적을수록, 조치율은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해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치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r=0.000 < 0.05$)을 통해 실태조사와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 간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종속변수를 엄격조치율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20] 가설2-2-2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독립변수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변수 (교육환경)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변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과 자치위원회 엄격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1]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	-0.074*** (-2.735)	-0.028 (-1.022)	-0.029 (-1.074)	-0.046 (-1.507)
남녀구분 더미1	-	-0.022 (-1.278)	-0.019 (-1.122)	-0.003 (-0.127)
남녀구분 더미2	-	0.032 (1.310)	0.033 (1.337)	0.012 (0.357)
학교규모 더미1	-	-0.396*** (-6.713)	-0.249** (-3.283)	-0.273** (-2.338)
학교규모 더미2	-	-0.296*** (-5.174)	-0.168** (-2.356)	-0.189* (-1.678)
학교규모 더미3	-	-0.226*** (-3.934)	-0.125* (-1.880)	-0.150 (-1.379)
학교규모 더미4	-	-0.017 (-0.282)	0.037 (0.574)	0.049 (0.429)

설립유형 더미	-	0.058*** (3.826)	0.067*** (4.350)	0.050*** (2.620)
학급당 학생수	-	-	-0.001 (-0.933)	-0.003* (-1.674)
교원당 학생수	-	-	-0.006** (-1.973)	0.000 (-.066)
피해응답률	-	-	-	0.011 (0.865)
가해응답률	-	-	-	-0.031*** (-3.094)
목격응답률	-	-	-	0.038** (2.585)
수정된 R제곱	0.001	0.021	0.022	0.013

※ () 안은 t값,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가를 거듭하여 최종 모형4에서 수정된 R제곱 값은 0.013으로 종속변수의 변동을 1.3%를 설명한다. 엄격조치율에 대한 외부위원 중 법조인 비율의 회귀계수는 -0.046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확률이 0.132(>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기타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가설 1-2와 비슷하다. 학교규모에 있어서는 대규모 학교가 통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엄격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r=0.019 < 0.05$), 설립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의 엄격조치율이 높게 나타난다($r=0.009 < 0.05$).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목격응답률이 엄격조치율에 정(+)의 영향을 미쳐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와 일관성을 가짐을($r=0.010 < 0.05$), 가해응답률이 엄격조치 수준의 사안까지는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음($r=0.002 < 0.05$)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2-3) 외부위원 중 의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이 높아진다.

[표22] 의사 비율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의사	16,657	.0	1.0	.017	.1279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16,657	.0000	1.0000	.009029	.0675740

2014~2016년 심의건수가 한 건 이상인 학교 16,657교에서 외부위원으로 의사를 최소 0명에서 최대 1명까지 위촉하였으며 교당 평균 0.02명 위촉하였다.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교 폭력 사안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관리 차원에서 법조인의 자치위원회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의사에게 자치위원회 참여 유인이 부족한 점, 정해진 병원 운영시간 등의 이유로 학교가 원해도 의사의 자치위원회 참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3] 의사 비율과 조치율, 엄격조치율 상관분석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조치율	엄격조치율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Pearson 상관	1	-.012	.006
	유의확률 (양측)		.149	.502
조치율	Pearson 상관	-.012	1	-.326
	유의확률 (양측)	.149		.000
엄격조치율	Pearson 상관	.006	-.326	1
	유의확률 (양측)	.502	.000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과 조치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유의확률은 0.149(>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엄격조치율의 경우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유의확률은 0.502(>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의사의 위촉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우선 종속변수를 조치율로 하는 회귀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맞는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표24] 가설2-3-1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조치율
독립변수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변수 (교육환경)	-	-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변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	-	-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과 자치위원회 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5]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과 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0.131 (-1.445)	-0.100 (-1.106)	-0.098 (-1.088)	-0.090 (-0.799)

남녀구분 더미1	-	-0.017 (-0.885)	-0.047** (-2.415)	-0.066*** (-2.862)
남녀구분 더미2	-	-0.028 (-1.091)	-0.053** (-2.046)	0.045 (1.211)
학교규모 더미1	-	0.399*** (6.231)	0.137* (1.656)	-0.019 (-0.145)
학교규모 더미2	-	0.323*** (5.202)	0.061 (0.784)	-0.082 (-0.657)
학교규모 더미3	-	0.276*** (4.426)	0.046 (0.641)	-0.124 (-1.029)
학교규모 더미4	-	0.110* (1.666)	-0.048 (-0.697)	-0.250** (-2.007)
설립유형 더미	-	-0.001 (-0.043)	-0.030* (-1.737)	-0.011 (-0.495)
학급당 학생수	-	-	0.016*** (10.182)	0.030*** (13.937)
교원당 학생수	-	-	-0.013*** (-4.487)	-0.032*** (-8.758)
피해응답률	-	-	-	-0.008 (-0.602)
가해응답률	-	-	-	0.069*** (6.246)
목격응답률	-	-	-	0.006 (0.380)
수정된 R제곱	0.000	0.008	0.015	0.021

※ () 안은 t값, ***: $p < 0.01$, **: $p < 0.05$, *: $p < 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가 추가될수록 수정된 R제곱 값이 높아져 설명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통제변수에 대하여 수정된 R제곱 값은 0.021로, 종속변수 변동의 2.1%를 설명한다.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의 회귀계수는 -0.090으로 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확률은 0.424(>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전국적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사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다른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남자학교($r=0.004<0.05$)와 소규모 학교($r=0.045<0.05$)에서 조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r=0.000<0.05$), 교원당 학생 수($r=0.000<0.05$)가 적을수록 조치율은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해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치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r=0.000<0.05$)을 통해 실태조사와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 간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종속변수를 엄격조치율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26] 가설2-3-2의 회귀모형 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엄격조치율
독립변수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통제변수 (객관적 조건)	-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남녀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통제변수 (교육환경)	-	-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통제변수 (학교폭력 실태 조사)	-	-	-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과 자치위원회 엄격조치율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7]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과 엄격조치율 회귀분석 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	0.057 (0.672)	0.009 (0.107)	0.011 (0.131)	0.014 (0.130)
남녀구분 더미1	-	-0.023 (-1.333)	-0.020 (-1.173)	-0.004 (-0.184)
남녀구분 더미2	-	0.033 (1.337)	0.034 (1.368)	0.013 (0.407)
학교규모 더미1	-	-0.398*** (-6.740)	-0.252*** (-3.310)	-0.279** (-2.386)
학교규모 더미2	-	-0.297*** (-5.194)	-0.169** (-2.374)	-0.193* (-1.713)
학교규모 더미3	-	-0.226*** (-3.935)	-0.126 (-1.881)	-0.152 (-1.398)
학교규모 더미4	-	-0.016 (-0.262)	0.039 (0.599)	0.051 (0.444)
설립유형 더미	-	0.057*** (3.781)	0.066*** (4.305)	0.049** (2.547)
학급당 학생수	-	-	-0.001 (-0.993)	-0.004* (-1.755)
교원당 학생수	-	-	-0.005* (-1.913)	0.000 (0.052)
피해응답률	-	-	-	0.011 (0.857)
가해응답률	-	-	-	-0.030*** (-3.018)
목격응답률	-	-	-	0.036** (2.489)
수정된 R제곱	0.000	0.021	0.022	0.013

※ () 안은 t값, ***: p<0.01, **: p<0.05, *: p<0.1

모형1에서 모형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가를 거듭하여 최종 모형4에서 수정된 R제곱 값은 0.013으로 종속변수의 변동을 1.3% 설명한다. 엄격조치율에 대한 외부위원 중 의사 비율의 회귀계수는 0.014로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확률은 0.897(>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기타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가설 학교규모에 있어서는 대규모 학교가 통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엄격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r=0.017<0.05$), 설립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의 엄격조치율이 높게 나타난다($r=0.011<0.05$).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목격 응답률이 엄격조치율에 정(+)의 영향을 미쳐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와 일관성을 가짐을($r=0.013<0.05$), 가해응답률이 엄격조치 수준의 사안까지는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음($r=0.003<0.01$)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결

2014~2016년 분석대상인 학교 16,657교에 대한 가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회귀분석을 통해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조치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제도를 통해 기대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엄격조치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회귀분석을 통해 엄격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조치율과 달리 엄격조치율의 경우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한 학생에게 선도 이상의 징계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인 바, 오히려 외부위원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혹은 엄격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학교나 형사사건의 사례에 비추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시키는 역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설 2】와 관련하여,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조치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인 학교전담경찰관이 업무수행 특성상 학생에 대한 교육적·선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엄격조치율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보다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는 엄격조치율의 경우 직업유형만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에서는 조치율과 외부조치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상 전체에서 약 12%를 차지하는 경찰공무원의 비율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법조인의 비율은 상관분석에 있어 조치율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엄격조치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형법을 포함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에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나 가해학생에게 제4호 이상의 징계와 같은 결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조치율과 엄격조치율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법조인의 비율만으로 의사결정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수를 차지하는 의사의 비율은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에 대한 상관분석에서도,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는 외부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공무원과 일정 수준을 확

보하고 있는 범조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사의 경우 더욱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분석의 한계

1. 분석범위의 한계

본 연구는 2014~2016년 학교알리미 등록 대상 학교 기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건수가 1건 이상인 학교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학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설학교나 분교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이다. 신설학교는 신설년도 당해에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부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할 것이다. 분교는 규모가 작고 주변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하여 별도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교의 자치위원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공시하여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설학교나 분교에 대하여는 명확한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존재한다.

심의건수가 없는 학교가 배제된 한계도 존재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여도 심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제외된 것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가 의무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한 경우 당사자 간의 화해등을 통하여 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 간 학교폭력 사실을 교사가 인지하지 못해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 개최건수는 없으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이 나타나는 학교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자치위원회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로 상정되지 않은 학교폭력건의 발생과 그 심각성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석범위에 한계가 존재한다.

양적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의 경우 엄격조치를 결정하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가벼운 조치에 그치는 것은 외부위원 비율과 관계없는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전국 12,000여개 교를 분석함에 있어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기엔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개별 사안의 질적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안이 외부위원 비율에 따라 어떤 조치의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외부위원 직업유형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현재 교원과 학부모가 아닌 외부위원은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 외에도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제7호).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조인과 의사 외부위원을 구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에 애정을 가진 다양한 인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구체적인 유형 구분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의 객관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외부위원 비율이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른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2. 학교폭력 원인 분석과 통제의 한계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매우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거나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사회적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지역 경제 수준의 영향 여부 등 개인과 사회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과 직업적 다양성 외에 학교폭력의 원인을 통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폭력이라는 행위는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원인을 가질 것이며, 이는 단순히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이 학교폭력 원인의 전부라 간주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카톡 감옥’과 같은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의 중요한 유형으로 고려되는 등 학교폭력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됨을 고려할 때 그 원인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의 각 케이스가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더 세분화된 자료가 있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나, 현재 그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제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례가 왜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 중 어디에 있는지 질적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치위원회 내 인적다양성으로써 외부위원의 비율이 높은 경우 가해학생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내리는지, 그 결과 조치의 객관성이 높아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위원 비율의 증가는 가해학생 조치율의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여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경미한 조치나마 결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서면사과라든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순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는 기록으로 남아 향후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면사과 수준의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생부 기재에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바, 조치율의 증가라는 객관성 제고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대리인 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외부인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관용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보이게 되었다.

반면 외부위원 비율의 증가가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조치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결정하여 제4호 사회봉사 이상의 엄격조치를 결정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선도를 넘은 징계적 성격의 조치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오히려 엄격조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유사 사례 경험이 적은 자치위원회의 감정적 결정을 억제한 결과라고 보면 이 또한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 단위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외부위원이 역할 수행 상 부담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더 나아가 객관적 결정을 저해할 다른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부위원의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위원이 아직 하위 직업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의사결정에의 영향을 분석하기엔 아직 낮은 비율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위원회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14.7% 수준의 외부위원 중 하위 직업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사결정 상의 차이를 나타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이 연구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하고 하위 직업유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구분되었을 때, 다시금 직업유형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로 다른 규범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직업유형에 따라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제적인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관한 제도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다른 일반 폭력행위보다도 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학생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 형성에는 물론, 전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거듭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에 대응하여 정부 당국은 엄격한 학교폭력 관리의 일환으로 자치위원회를 학교별로 구성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 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을 확대하도록 권장하여 왔으나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같이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에 일정한 효과를 가지는 바, 앞으로 자치위원회 내 외부위원의 비율을 제고시켜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단위의 외부위원 위촉을 지원하고, 읍면지역이나 도서벽지 등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공동 활용을 위한 인재풀 관리 등을 통해 외부위원 위촉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치위원회 조치의 객관성 제고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수, 장사형. (2017). 학교폭력 기구 및 조치과정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919-930.
- 김성훈, 박철순. (2000).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전략경영연구, 3(2), 1-23.
- 김수현, 권정혜, 이봉건. (1992). 부모양육변인들과 교우관계변인들이 청소년초기의 숨은 비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992(0), 515-524.
- 김순혜. (2012).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교육, 21(3), 5-17.
- 김영환, 김문태. (2007).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와 사외이사의 특성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2(4), 29-58.
- 김정현, 김영천. (2012). 연구논문 :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7(2), 29-58.
- 김창균, 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173-198.
- 김창수. (2006).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기업가치. 재무연구, 19(2), 105-153.
- 김현철. (2010). 연구논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시론적 고찰-. 법교육연구, 5(1), 69-83.
- 곽영길. (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8.
- 곽지영, 손성규, 이호영.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 지배구조의 특성. 회계연구, 14(3), 83-125.
- 권순희. (2003).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에 관한 비교 검토. 상사법연구, 21(4), 177-214.
- 권일웅. (2012).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행정논총, 50(2), 113-142.

- 노성호. (2004).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통권, (15).
- 문용린 외 공저.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53.
- 이경환, 서정일. (2015). 사외이사의 전문적 경험과 이사회 효과성에 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9(2): 133-161.
- 이기수. (2002). 회사법(상법강의 II). 박영사, 314.
- 이문영. (2013). 경영성과와 공시빈도: 코스닥 기업과 유가증권상장기업 비교.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16(3), 51-67.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 정책, (5), 303-310.
- 이수정. (2013). 사외이사 및 감사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2012년). 경제개혁리포트, (2013-03), 5-37.
- 이춘재, 광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정재준. (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서울대학교 법학, 53(1), 529-570.
- 조종태. (2013).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저스티스, , 141-160.
- 하운수. (2018).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동아법학, (78), 405-429.
- 한유경, 이주연, 박주형. (2013).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교육과학연구, 44(4), 73-97.
- 한유경, 이희숙, 김성식, 이윤희. (2016).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1), 145-168.
- 한재경. (2018).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8(1), 131-161.
- Fama and Jensen, (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6, No. 2, pp.301-325.
- Hambrick, D. C., (2007), Upper echelons theory: An updat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2), 334-343.

- Finkelstein, S., Hambrick, D. C., & Cannella, A. A.(2009), Strategic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on executives, top management teams, and board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Rosenstein, S. and J. Wyatt, (1990), “Outside directors, board independence and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75-191.
- Hermalin, B. and M. Weisbach, (1991), “The effect of board composition and direct incentives on firm performance”, Financial Management, 101-112.
- Jensen, M., & Meckling, W.,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305-36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 가해 사실 2012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보도자료.
- 교육부. (2014).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 교육부. (20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 교육부. (201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2017).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교육부. (2018).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마련” 보도자료.
- 교육부. (2018). 청소년 폭력 관련 관계 장관 긴급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 김형준. <한국일보>. 2017년 10월 27일. 학교 폭력에 변호사부터 부르는 부모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70457539329>